

● 제283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7. 9.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8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 : 2018. 8. 16.

다. 회부일 : 2018. 8. 21.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 복지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2조 2,963억 2백만원으로 당초보다 91억 8천만원(0.4%)이 증가되었으며,
-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1조 962억 9천 6백만원으로 당초보다 3천 8백만원(0.0%) 증가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예산	2018년도		증감(비율)	비고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3,118,953	3,392,598	3,383,380	9,218(0.3)		
일반회계	2,051,291	2,296,302	2,287,122	9,180(0.4)		
세외 수입	경상적	13,061	13,504	14,169	△665(△4.7)	
	임시적	22,082	37,140	37,140	0(0)	
지방교부세	170	170	170	0(0)		
국고보조금 등	1,996,896	2,232,896	2,223,051	9,845(0.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081	12,591	12,591	0(0)		
특별회계	1,067,662	1,096,296	1,096,258	38(0.0)		
세외 수입	임시적	501	526	526	0(0)	
국고보조금 등	532,800	544,138	547,047	△2,909(△0.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34,360	551,632	548,685	2,947(0.5)		

나. 세출예산

- 복지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5조 7,070억 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39억 9천 2백만원(0.6%)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7년	2018년			비고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합 계	5,290,303	5,707,002	5,673,010	33,992	
행정운영경비	549	588	566	22	
재 무 활 동	564,994	564,272	558,592	5,680	
사 업 비	4,724,760	5,142,142	5,113,852	28,29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총괄 검토

- 2018회계연도 제1차 복지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은 예산집행 실태와 중앙정부와의 국비 매칭 사업 중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및 시비 편성액을 추가하는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집행계획을 재점검하며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 복지본부 소관 추경안은 기정예산(5조 6,730억1천만원)과 비교하여 42건 500억 4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의 0.28 %인 12건 160억 4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음.

<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추가경정 예산 요구(안)			
			감 액	%	증 액	%
계	5,707,002	5,673,010	13,140	0.2	47,132	0.8
사 업 예 산	5,142,142	5,113,852	13,140	0.3	41,430	0.8
행정운영경비	588	566	-	-	22	3.9
재 무 활 동	564,272	558,592	-	-	5,680	1.0

※ 총 54건(45개 사업) 186,542백만원 (국비 6,936백만원, 시비 11,602백만원)

- 증액사업 : 42개 사업 증 50,041백만원
- 감액사업 : 12개 사업 감 8,635백만원

○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를 보면 총 5조 7,070억 2백만원이 편성된 바, 국·시 매칭사업으로서 국비변경에 따른 매칭 반영 사업은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162억 8천4백만원, 증 44억7백만원)을 포함한 19개 사업으로써 추경반영액은 125억 6천 8백만원이고, 시(市)자체 사업에 따른 추경 증가액은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 지원사업(137억3천1백만원, 증 34억3천2백만원)을 비롯한 20개 사업으로써 추경 반영액은 68억 6천 5백만원임.

<표> 유형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변경	안전 관련	시 자체필요	법정의무
계	54건	19건	8건	20건	7건
	(x6,936)	(x5,896)	(x1,040)	(x-)	(x-)
	33,992	12,569	5,969	6,865	8,589
일반회계	49건	15건	8건	19건	7건
	(x9,845)	(x8,805)	(x1,040)	(x-)	(x-)
	30,254	12,531	5,969	3,165	8,58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건	4건	-	-	-
	(x△2,909)	(x△2,909)	-	-	-
	38	38	-	-	-
도시개발 특별회계	1건	-	-	1건	-
	(x-)	-	-	(x-)	-
	3,700	-	-	3,700	-

※ 추경증가액 50,041백만원 중 국비변경에 따른 국·시비 조정 12,568백만원 등을 감한 실증가액은 33,992백만원임

2 세입 추경안 검토

- 복지본부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2조 2,963억 2백만원으로 당초보다 91억 8천만원(0.4%)이 증가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예산	2018년도		증감(비율)	비고
		추경예산	본예산		
합 계	3,118,953	3,392,598	3,383,380	9,218(0.3)	
일반회계	2,051,291	2,296,302	2,287,122	9,180(0.4)	
세외 수입					
경상적	13,061	13,504	14,169	△665(△4.7)	
임시적	22,082	37,140	37,140	0(0)	
지방교부세	170	170	170	0(0)	
국고보조금 등	1,996,896	2,232,896	2,223,051	9,845(0.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081	12,591	12,591	0(0)	
특별회계	1,067,662	1,096,296	1,096,258	38(0.0)	
세외 수입					
임시적	501	526	526	0(0)	
국고보조금 등	532,800	544,138	547,047	△2,909(△0.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34,360	551,632	548,685	2,947(0.5)	

- 일반회계에서 국·시비 사업의 국비 변경 내시 및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반영하였으며,
- 특별회계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과 기타회계전입금 감액분을 상계한 증액분을 반영한 예산임.

3 세출 추경안 검토

가. 추경안 중 국·시비 증액 편성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

1) 총괄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매칭사업 중 2018년 사업비 국비 추가확보에 따라 매칭비율에 의거한 시비 부담분을 조정하여 세출예산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복지본부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44억7백만원)”, “의료급여사업(3억3천8백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2억3천7백만원)”,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1억5천6백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4억4천8백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용(19억4천6백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4억9천9백만원)” 등 국비변경에 따른 국·시비 조정 19건 12,568백만원(국비 5,896백만원, 시비 6,673백만원), 안전관련 설비보강 등 8건 5,969백만원(국비 1,040백만원, 시비 4,929백만원) 및 시 자체필요 20건 6,865백만원으로 총 45개 사업에 339억 9천2백만원(증액 42건 500억 4천 1백만원, 감액 12건 160억 4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집행부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중 국시비 증액 사업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추가경정예산 국시비 증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8예산 (추경예산안)	본예산 대비		기정예산 대비	
	본예산	기정예산 (8.24. 현재)		증감	비율	증감	비율
합 계	(x839,965) 2,447,353	(x843,919) 2,451,307	(x850,855) 2,485,299	(x10,890) 37,946	1.6	(x6,936) 33,992	1.4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8예산 (추경예산안)	본예산 대비		기정예산 대비	
	본예산	기정예산 (8.24. 현재)		증감	비율	증감	비율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지원	(x17,769) 20,167	(x17,769) 20,167	(x17,769) 20,467	(x0) 300	1.5	(x0) 300	1.5
국고보조금 반환금 (복지정책과)	1,919	1,919	2,063	143	7.5	143	7.5
정부양곡 할인 지원	(x12,128) 12,635	(x15,777) 16,284	(x20,008) 20,690	(x7,880) 8,055	63.8	(x4,231) 4,407	27.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3,731	13,731	17,163	3,432	25.0%	3,432	25.0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2,256	2,256	2,336	80	3.5	80	3.5
의료급여사업	(x545,763) 1,093,691	(x545,763) 1,093,691	(x543,005) 1,094,029	(xΔ2,75 9) 338	0.0%	(xΔ2,75 9) 338	0.0
의료급여관리사지원	(x1,265) 2,532	(x1,265) 2,532	(x1,104) 2,209	(xΔ161) Δ323	Δ12.8	(xΔ161) Δ323	Δ12.8
긴급복지지원사업	(x11,400) 17,100	(x11,400) 17,100	(x11,558) 17,337	(x158) 237	1.4	(x158) 237	1.4
인력운영비 (의료급여사업)	(x18) 36	(x18) 36	(x29) 58	(x11) 22	61.1	(x11) 22	61.1
의료급여기금특별회 계전출금	547,047	547,047	544,138	Δ2,909	Δ0.5	Δ2,909	Δ0.5
국고보조금 반환금 (희망복지지원과)	252	252	783	532	210.7	532	21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173,045	173,045	163,872	Δ9,174	Δ5.3	Δ9,174	Δ5.3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x5,148) 6,727	(x5,148) 6,727	(x6,188) 8,876	(x1,040) 2,148	31.9	(x1,040) 2,148	31.9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x368) 773	(x368) 773	(x446) 929	(x78) 156	20.2	(x78) 156	20.2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3,067	3,067	2,867	Δ200	Δ6.5	Δ200	Δ6.5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기본)	(x7,613) 11,420	(x7,613) 11,420	(x7,199) 10,798	(xΔ414) Δ621	Δ5.4	(xΔ414) Δ621	Δ5.4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종합)	(x6,007) 9,010	(x6,007) 9,010	(x4,921) 7,382	(xΔ1,08 6) Δ1,629	Δ18.1	(xΔ1,08 6) Δ1,629	Δ18.1
고양시 대로 3-33호선 도로확장 분담금	1,000	1,000	2,300	1,300	130.0	1,300	130.0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8예산 (추경예산안)	본예산 대비		기정예산 대비	
	본예산	기정예산 (8.24. 현재)		증감	비율	증감	비율
서울 추모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8,830	8,830	12,530	3,700	41.9	3,700	41.9
국고보조금 반환금 (어르신복지과)	3,532	3,532	3,675	143	4.0	143	4.0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6,766	6,766	10,054	3,289	48.6	3,289	48.6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x0) 0	(x0) 0	(x1,508) 4,241	(x1,508) 4,241	-	(x1,508) 4,241	-
보람일자리 사업	8,006	8,006	8,906	900	11.2	900	11.2
국고보조금 반환금 (인생이모작지원과)	1,090	1,090	5,715	4,625	424.3	4,625	424.3
장애인거주시설운영	(x39,492) 95,071	(x39,492) 95,071	(x40,465) 97,016	(x973) 1,946	2.0	(x973) 1,946	2.0
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및 운영	30	30	0	△30	△100	△30	△10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x370) 741	(x370) 741	(x620) 1,240	(x250) 499	67.3	(x250) 499	67.3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x28) 354	(x28) 354	(x28) 527	(x0) 173	48.9	(x0) 173	48.9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x1,155) 1,938	(x1,155) 1,938	(x774) 1,547	(x△381) △391	△20.2	(x△381) △391	△20.2
국고보조금 반환금 (장애인복지정책과)	1,162	1,162	2,208	1,046	90.0	1,046	90.0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x110,016) 220,626	(x110,016) 220,626	(x110,016) 223,420	(x0) 2,795	1.3	(x0) 2,795	1.3
장애수당-기초	(x9,004) 29,113	(x9,004) 29,113	(x9,304) 29,713	(x300) 600	2.1	(x300) 600	2.1
중증장애인연금	(x66,944) 113,677	(x66,944) 113,677	(x70,137) 119,233	(x3,193) 5,556	4.9	(x3,193) 5,556	4.9
여성장애인홍혈퍼지원	1,137	1,137	1,211	74	6.5	74	6.5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	(x72) 144	(x72) 144	(x67) 134	(x△5) △10	△6.9	(x△5) △10	△6.9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2,265	2,265	2,624	359	15.8	359	15.8
은평장애인복지관 건립	500	500	1,500	1,000	200.0	1,000	200.0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2,204	2,204	2,304	100	4.5	100	4.5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8예산 (추경예산안)	본예산 대비		기정예산 대비	
	본예산	기정예산 (8.24. 현재)		증감	비율	증감	비율
국고보조금 반환금 (장애인자립지원과)	1,098	1,098	1,750	652	59.4	652	59.4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1,134	1,134	1,389	255	22.5	255	22.5
노숙인 의료지원	7,015	7,015	6,865	△150	△2.1	△150	△2.1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x1,197) 3,764	(x1,502) 4,069	(x1,502) 7,045	(x0) 3,281	87.2	(x0) 2,976	73.1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1,947	11,947	11,454	△493	△4.1	△493	△4.1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x4,208) 6,312	(x4,208) 6,312	(x4,208) 6,761	(x0) 448	7.1	(x0) 448	7.1
국고보조금 반환금(자활지원과)	2,492	2,492	3,940	1,447	58.1	1,447	58.1

2) 사업별 검토

가)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

▶ 사업 및 추경 개요

- 본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구입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사업의 개요

- ① 사업근거 : 양곡관리법 제9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② 사업내용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 구입희망자에게 50~90%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제공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 구입 희망자
 - 사업종류 : 19개 사업(자치구별 신청에 의거 사업시행, 구별4개~10개)
 - 지원내용 : 정부양곡 구입 희망자에게 50~90%할인된 가격으로 공급1)
 - ※ (지원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
- ③ 소요예산 : 20,690백만원(추경예산 기준)
 - ※ 추진실적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평균 66,784가구 73,564포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평균 11,952가구 14,472포

1) 정부양곡 할인 공급가액

(단위 : 원/1포 기준)

구 분		양곡대금	예산지원	본인부담
신 곡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940	1,6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340	8,200
('17년산)	2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9,510	3,2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6,410	16,300

※ 매월 가구원수 1인당 10kg씩 구매 가능(예시 : 5인/50kg, 6인/60kg까지 구매 가능)

※ 택배배달 및 단가: 전국광역자활기업, 20kg 2,900원/ 10kg 2,500원(1포 기준)

▶ 수혜대상자 추계 누락 및 연례적·관행적 예산편성의 문제

-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2018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비예산변경액(4,231백만원)에 따른 시비 추가 부담분(176백만원)을 반영하여 증액편성(44억 7백만원)한 추경안으로서 사업의 목적 및 지원대상만을 보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안전망 확보측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 정부양곡 지원사업의 3년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16년도 예산액 126억7천 8백만원 대비 집행잔액 24억5천3백만원으로 불용율 20%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반면에 '17년도는 예산액 149억4천9백만원 대비 집행잔액은 2천5백만원으로 '16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용액이 낮게 나왔음.
- '18년도 기정예산 162억8천4백만원에 대하여 추경액이 44억7백만원으로 증액률이 27.1%로 높게 산정되는 등 과학적이고 치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집행부가 당초 정부양곡가격 책정이 1월에 고시되는 연례적 행위를 예산 시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등의 준비소홀 및 수혜대상자를 면밀히 추계하지 못한 점이 보여짐.

<표> 정부양곡 5년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연 도	기정예산	추경	예산현액(a) (추경후)	집행액(b)	잔액	집행률 (a/b)
2018.8월	16,283	4,407	20,690	13,785	2,498	66.62 (84.65)
2017	14,949	-	14,949	14,924	25	99.8
2016	12,678	-	12,678	10,225	2,453	80.6
2015	12,443	67	12,510	12,510	-	100.0
2014	13,675	-	13,675	13,675	-	100.0

- '15년도부터 '18년도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지원계획을 세워 향후 불용액 과다로 인한 비효율적 기회비용 또는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표> 양곡할인 지원 실적

(단위 : 가구, 포)

연도	20kg		10kg		지원실적	
	금액	택배비	금액	택배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2015년	44,410원	2,700원	22,290원	2,400원	31,518가구 33,413포	8,801가구 10,440포
2016년	32,510원	2,750원	16,400원	2,400원	31,669가구 33,682포	7,963가구 9,384포
2017년	28,110원	2,800원	14,240원	2,500원	54,534가구 58,458포	9,989가구 11,969포
2018년	32,710원	2,900원	16,540원	25,00원	68,360가구 75,440포	12,325가구 15,022포

▶ 추경타당성 여부

- 본 사업의 경우 '19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가 여부를 따져 심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예산편성 자구노력이 필요함.

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 사업 및 추경 개요

- 본 사업은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사업의 개요

- ① 사업근거 : 「서울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 ②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4인기준 1,943천원)
 - 재산기준 : 가구당 135,000천원 이하(금융재산 30,000천원 이하)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③ 사업대상 : 생활수준이 어려운 법정기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 ④ 지원내용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의 50%), 해산·장제급여(맞춤형 급여와 동일)
- ⑤ 재원부담 : 시비 100%

- 2018년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43%로 완화하여 대상자가 증가하였으며, 찾아가는 복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수혜 대상자를 발굴하여 '18년 7월 현재 수급대상자가 6,822명으로 증가됨.

▶ 전례적·답습적 예산편성 문제

- 본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예상되는 제도개선으로 인한 대상 확대 및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는 복지 사각지대의 수급 대상자가 예상되었으며, 고령사회로 진입됨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또한 예상되었던 바, 집행부의 대상자 추계 누락 등의 예산편성 시의 준비소홀이 보여짐.

- 또한, 아래의 <표>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실제 월평균 지원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도말 수급대상자 현원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바,

<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3개년간 집행현황

(단위: 명)

구분	당초 계획인원	실제 지원인원 (월평균)	연도말 현원	비고
2016년	5,400	4,066	4,628	
2017년	5,174	5,406	6,062	전용, 변경
2018년	5,462	6,563	6,822	'18. 7현재

- 집행부가 해당 사업의 예산편성 시 이러한 추계를 정확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전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에 기인하였다 사료됨.
-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수급대상자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지원 대상자와는 다른 성격의 시급을 요하므로 향후 수급 대상자의 추이를 적정히 살펴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와 관심이 요망됨.

▶ 추경타당성 여부

- 본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시급성을 요하며 다른 수단을 통하여 수혜대상자의 상황극복이 곤란한 사안도 예측되므로 비록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편성의 문제는 보이나 추경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판단됨.

단, 집행부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관련한 자체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함.

다) 의료급여 사업

▶ 사업 및 추경 개요

-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의료급여 비용을 적기에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의욕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사업의 개요

- ①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
- ② 규 모 : 246,479명(1종: 168,613명, 2종: 77,866명)
 - 1종 : 168,547명(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등)
 - 2종 : 78,717명(기초수급자 중 1종 이외의 자)
- ③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④ 사업내용 :
 -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 의료급여업무 위탁수수료, 진료비 심사수수료 등
 -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등
- ⑤ 재원분담: 국비 50%, 시비 50%

- 집행부는 국비(보건복지부) 감액 변경내시액 55억1천7백만원(국비 27억5천9백만원, 시비 27억5천8백만원)과 '17년도 결산액 순세계잉여금(시비) 55억1천7백만원을 반영하여 전체 예산은 3억 3천 8백만원 증액분을 추경안으로 편성하였음.

▶ 불용액 과다 발생 문제

- 아래 <표>의 의료급여사업의 5개년 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99%를 상회하나 각 년도의 불용액을 보면 '14년도는 1억1천만원, '15년도는 20억4천만원, '16년도는 3백만원이고 '17년도 불용액은 88억 3천만원으로 과다 발생한 것을 보임.

<표> 의료급여사업 5개년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2014	826,700	826,589	99.9	111
2015	888,3000	886,261	99.8	2,039
2016	934,190	934,186	99.9	4
2017	1,067,628	1,058,790	99.2	8,838
2018 (7월말 기준)	1,093,691	868,604	79.4	-

▶ 순세계잉여금 관리 문제

- 또한 의료급여사업의 순세계잉여금 현황 및 차년도 순세계잉여금 반영률을 보면, 차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도 세입예산액이 아닌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집행부의 예산 편성 시 정확한 결산없이 임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후 매년 추가경정 예산 시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반영하여 차감하는 등의 방만한 예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불용액에 대한 정확한 결산 및 집행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표> 순세계잉여금 현황 및 차년도 순세계잉여금 반영률(예산액 대비)

(단위: 천원, %)

연도	세입액 (A)	세출액 (B)	순세계잉여금 (C=A-B)	차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	차년도 본예산 반영률
2013	829,139,555	819,303,867	9,835,688	8,700,000	88.5
2014	828,149,142	826,588,725	1,560,417	685,000	43.9
2015	889,818,767	886,260,650	3,558,117	1,560,000	43.8
2016	938,692,887	934,186,211	4,506,676	1,560,000	34.6
2017	1,066,317,753	1,058,824,197	7,493,556	1,638,000	21.9

- '17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18년 추경에 58억원을 추가편성 예정(본예산 16억원, 추경예산 74억원)

▶ 추경타당성 여부

- 본 사업의 특성상 집행잔액에 따른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산의 사장(死藏) 방지를 위해 적정 예산 집행을 통한 불용액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의 사안으로 판단컨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에게 의료급여 지급이라는 긴급성은 인정되나, 반드시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하는 하는지에 대해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라) 긴급복지지원사업

▶ 사업 및 추경 개요

- 본사업은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선지원, 후조사로 시기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사업의 개요

- ① 사업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17조
- ② 대 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389,402원)
 - 재산기준 : 가구별 13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질병·부상 등
- ③ 지원내용 :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장제비 등)
- ④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같은 사업의 기정예산은 17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의 수요조사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수요 증가를 추산함으로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국비 추가분(1억 5천 8백만원)을 제출한 바, 이에 매칭하는 시비분 증액 7천 9백만원 증액²⁾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추경안이라고 하겠음.

<표> 긴급복지사업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11,558) 17,337	(x11,400) 17,100	(x158) 237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x11,558) 17,337	(x11,400) 17,100	(x158) 237	○ 긴급복지지원사업 (x158) 237

▶ 불필요한 시비 매칭분 편성에 의한 불용액 발생 문제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위기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에 대해 수궁할 수 있음.
- 그렇지만 매년 결산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추산한 통계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인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불필요한 시비 매칭분 편성에 의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 상당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보조금 내시에 대해 소극적인 추경 반영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합리적 예산 편성을 위한 협상과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 국비 추가필요분이 1억5천8백만원일 경우 매칭비율(국비50%, 시비25%, 구비25%)를 감안할 때, 시비 추가필요분은 7천 9천만원임.

<표> 긴급복지지원사업 5년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18.8월	17,100,000	14,933,364	2,166,636	87%
2017	20,550,000	20,550,000	-	100%
2016	17,557,500	17,557,500	-	100%
2015	21,553,500	21,553,500	-	100%
2014	11,069,332	11,069,332	-	100%

- 아울러 수급대상자 인정사유 별 구분에 따라 전년도 대비 급격하게 지원건수가 늘어난 항목별 사항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한 지원 확보방안 마련이 요망됨.

<표> 수급대상자 인정사유 별 구분 현황

(단위 : 건수)

위기사유	지원건수 (2018.8월)
합 계	22,519
제1호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	294
제2호 중한 부상 또는 질병	5,406
제3호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10
제4호 가구원의 가정폭력·성폭력	174
제5호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695
제6호 지자체조례로 정한 사유	8,434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이혼)	205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단전)	46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휴·폐업-주소득자)	383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실직-주소득자)	2,882

위기사유	지원건수 (2018.8월)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출소)	3,518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노숙)	348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휴·폐업-부소득자)	11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실직-부소득자)	103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화재등 실질적 영업곤란-주소득자)	6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화재등 실질적 영업곤란-부소득자)	4

▶ 추경타당성 여부

- 본 사업은 '19년 본예산에 구체적 방안과 계획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협상과 검토가 요망되며,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하는 사유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마)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 사업 및 추경 개요

- 본사업은 노인보호전문기관(2개소, 아래표 참조)을 지원하여 가족간 갈등 및 부양부담에 따른 어르신 학대 사례의 상담, 보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어르신 학대 사례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1개소)지정을 통한 어르신 인권 보호와 시설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해 나가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표>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구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 영 체	(재)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사)참누리
소 재 지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강북구 노해로 69
운영인력	9명(기관장1, 상담원8)	9명(기관장1, 상담원8)
관할구역	13개 자치구(강남지역)	12개 자치구(강북지역)
개소년월	2004. 12.	2011. 7.
'18년 예산	384,870천원(국비50%, 시비50%)	384,870천원(국비50%, 시비50%)
주요업무	-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사례조치, 사후관리 - 어르신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의 ‘2018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추가 설치가 결정됨에 따라 집행부는 ‘서울 서부지역³⁾ 노인보호전문기관’ 을 신설 운영하기 위해 시비 7천8백만원(국비 50%, 시비 50%)을 반영·편성된 추경안임.

▶ 급속한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학대 문제

-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 간 갈등, 노인부양부담증대 등으로 노인학대사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사후관리 프로그램 및 현황자료를 보면, 학대 어르신에 대한 개별·집단상담 및 가족·관련자 상담을 통한 심리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재가서비스,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는 등 노인학대사태에 대한 현장에서 각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운영지역 : 서울시 8개구 (종로·중·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

<표> 사례에 따른 서비스 지원 실적 (2017년)

구분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건)			일시보호 현황		서비스 제공 현황(명)		
	소계	현지조사	방문상담	인원(명)	일수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연계	법률서비스
계	2,541	444	2,097	35	1,686	117	2,812	20

- 아래 <표>의 어르신학대현황을 보면, 학대사례 및 학대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대 피해자 상담치료뿐만 아니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의 다면적 구성 또한 필요하며, 실업 및 생계난으로 인한 학대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표> 어르신학대현황 (2018년 7월 기준)

(단위 : 건)

구분	신고접수건수			상담건수			사례판정건수			
	일반 사례	학대 사례	소계	일반 상담	학대 상담	소계	응급	비응급	잠재 사례	소계
계	694	339	1033	1865	6667	8532	7	238	94	339

▶ 추정타당성 여부

- 학대피해노인 발생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서울서부지역에 피해 노인의 치유와 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 확보 및 상담 인력 배치가 요망된다고 할 것인 바, 추가예산 편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바) 보람일자리 사업

▶ 사업 및 추경 개요

- 본 사업은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대에게 사회공헌일 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와 활력 있고 안정된 인생후반기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보람일자리 사업개요

- ①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4
- ② 지원대상 : 만 50세~67세 이상 서울시민
- 5대 영역(사회서비스형, 세대통합형, 사회적경제형 등) 31개 사업, 총 2,236개
- ③ 추진현황 : 1,891명 활동 중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 등에서의 사회공헌일자리 연중 지원

▶ 추경요건의 부합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2018년 보람일자리 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크게 5가지 유형 i)사회서비스, ii)마을지원, iii)세대통합 유형 및 iv)당사자, v)사회적 경제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 특히 마을지원유형에서 공공복지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례관리 동행방문 지원, 자원봉사자 관리 및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사회공헌을 통한 보람일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세대통합유형의 50+취업진로전문관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정보 및 취업처

발굴 등 50+세대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며, 한지붕세대공감사업은 서울형 세대통합 홈세어링으로써 서울시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보여짐.

<표> 2018년 지원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준일:18.7.31일, 단위: 백만원)

연번	유형	수행기관	세부사업명	'18년 예산액현황	활동내용
1	사회서비스	장애인복지정책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지원단	298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업무 지원
2			장애인시설지원단	2,135	장애인시설 업무 지원
3		장애인자립지원과	성인발달장애활동도우미	231	발달장애인 전담 개별지원, 점심식사 보조 등
4			장애인직업재활지원단	234	
5		50+재단	IT지원단	81	취약계층 IT 교육
6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564
7	마을지원	희망복지지원과	우리동네돌봄단	446	
8		복지정책과	공공복지서포터즈	589	사례관리 동행방문 지원, 자원봉사자 관리,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9		50+재단	행복도시락나눔지원단	102	
10		50+재단 (도심권50+센터)	50+에너지컨설팅사업단	160	서울시 내 노후 공공건물 조사, DB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
11		동작50+센터	지역특화일자리	467	현충원 지킴이, 저소득층 어린이 학습 지도 등
12		50+재단	50+마을기록자	94	*미시행
13	세대통합	50+재단	50+취업진로전문관	225	진로상담, 이력서 및 자기소개 컨설팅, 면접기술교육, 취업정보리서치, 취업처 발굴 등 취업 지원
14			청소년시설50+지원단	340	
15			학교안전관리지원단	380	
16			학교안전교육단	97	
17		한지붕세대공감	1기 2기	179	서울시 세대통합형 홈세어링 사업홍보

연 번	유형	수행기관	세 부 사업명	'18년 예산액현황	활동내용	
18	세대통합	50+재단	어린이집50+지원단	103		
19			도시농부텃밭교육단	64	초등학교 텃밭교육 지원	
20			어르신일자리지원단	255		
21		대한노인회	경로당복지파트너	874		
22		(사)치매협회	독거어르신 후견지원단	325	독거어르신 후견 지원	
23		50+재단	50+건강코디네이터사업단	240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대상 인지기능 강화훈련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	
24	당사자	50+재단	50+학습지원단	4098	50+당사자를위한맞춤형학습설계	
25			50+컨설턴트	406		
26			50+커뮤니티지원단	77	50+커뮤니티발굴·육성	
27		희망복지과	50+동년배말벗	67	*미시행	
28	사회적경제	50+재단	50+NPO 펠로우십	코디네이터 50+펠로우	115	비영리단체 전문업무분야 및 사업지원
29			50+SE 펠로우십			
30			50+사진단	49		
31			자활기업경영지원단	95		

- 보람일자리 사업의 3년간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16년도 예산액(27억5천5백만원)에 비해 '17년도 예산액(70억 6백만원)은 3배이상 증가되었고 '18년도 예산은 1.5배 증가되었음.
- 보람일자리 사업의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7년도

6억6천6백만원이고 '18년도 현재 불용액은 29억 4천 8백만원으로 사업이 시행 중임을 감안하더라도 불용액이 과다한 편으로 사료됨.

<표> 연도별 예산 지원현황(2016~2018년)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율 (7.31일 현재)	비고
2016	2,755	2,737	18	99.3	
2017	7,006	6,340	666	90.5	※추경예산 3,000백만원
2018	10,006	7,058	2,948	70.1	예산변경포함 (2,000백만원)

- 금번 추경은 중장년층의 높은 일자리 수요와 사회복지시설 등의 만성적인 인력난 심화에 따른 현 참여자의 활동기간 연장(9.5개월 → 11개월)을 그 사유로 하는 바, 이는 예산 수립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50+세대인 장년층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한다는 점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고려할 때, 향후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추경타당성 여부

- 본 사업의 경우 '19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가 여부를 따져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 사업 및 추경 개요

- 본 사업은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음.

사업 개요

- ①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45개소
 시립 1(민간위탁1), 민간 44 / 사회복지법인 44, 개인 1/ 서울 27, 지방 18
- ②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③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50%

-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추가 예산지원이 편성됨에 따라 국시비 매칭 50:50으로 국비 추가 교부(9억7천3백만원) 예정을 반영하여 시비분(9억7천3백만원)을 추가하려는 내용임.

<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40,464,602) 97,016,326	(×39,491,715) 95,070,552	(×972,887) 1,945,774	
사무관리비	60,000	60,000	-	
시책업무추진비	1,600	1,600	-	
사회보장적수혜금	372,000	372,000	-	
민 간 위 탁 금	(×1,952,062) 4,760,700	(×1,902,062) 4,660,700	(×50,000) 100,000	◦시립시설 운영 (×50,000) 100,000
사회복지사업보조	(×38,512,540) 91,822,026	(×37,589,653) 89,976,252	(×922,887) 1,845,774	◦민간시설 운영 (×922,887) 1,845,774

▶ 재원에 대한 기회비용 사장

- 2016년과 2017년 결산자료를 보면, 2016년 불용률 8%(75억 5천만원), 2017년 불용률 2%(19억) 인 바, 불용률이 높은 편이 아니지만 불용금액이 상당한 수준으로서 재원에 대한 기회비용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 불용사유 및 추경 적정성 여부

- 본 사업의 불용사유를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입소장애인 및 종사자 인원이 수시 감소 중에 있어 이용인 및 종사자 현원으로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 및 인건비가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불용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바, 앞으로는 이용인 및 종사자의 추이를 적정히 살펴서 중앙정부와 정보공유를 통해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와 관심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 활동지원급여

▶ 사업 및 추경 개요

- 본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사업개요

① 지원대상 : 만 6세~65세 미만의 1~3등급의 중증장애인 (소득기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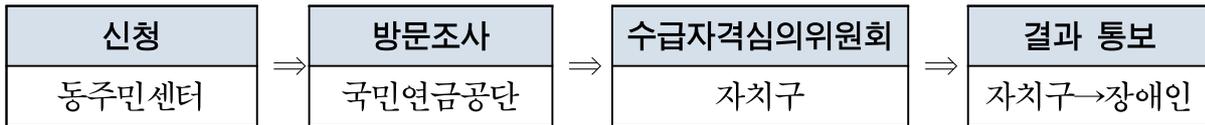
- 국고보조사업 : 1~3등급 장애인으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시비추가사업 : 국고보조사업 1등급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및 국고지원 탈락 1등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 220점 미만인 자, 시설 퇴소자

② '18년 대상인원 : 월16,700명

(단위 :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
국고 보조	11,920	10,435	11,600	12,037	13,058	13,331	13,457
시비 추가	1,917	2,295	1,854	2,014	2,125	2,329	2,350
합계	13,837	12,730	13,454	14,051	15,183	15,660	15,807

③ 대상자 선정절차



④ 지원급여 : 등급에 따라 월 40시간~742시간(국고48~392, 시비40~350)

- ▶ 기본급여 : 활동지원 등급별 지원
- ▶ 추가급여 : 수급자 생활환경에 따라 지원
- ▶ 시추가급여 : 장애1등급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1등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220점 미만인 자, 시설퇴소 장애인

- 집행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 대상자 증가(매월 평균 28명)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기정예산 2,206억 2천 6백만원 대비 시비 27억 9천 5백만원을 증액한 2,234억 2천만원의 추경안을 편성하였음.

<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110,016,000) 223,420,210	(x110,016,000) 220,625,555	(x-) 2,794,655	
사무관리비	750	75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900	4,9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110,016,000) 223,381,560	(x110,016,000) 220,586,905	(x-) 2,794,655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2,794,655
공기관등에대한경상 적 위 탁 사 업 비	33,000	33,000	-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시비추가 지원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지원액	집행률	지원인원(명)
2018년 6월	29,168	15,810	54.2%	2,350명

▶ 추경 적정성 여부 및 예산 편성시 주의점

- 그러나 사회보장정보원 통계자료를 보면 시비추가사업 필요예산이 319억 6천 3백만원으로서 필요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반영한 추경안인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본예산 추계시 수요조사 반영을 통한 치밀한 예산 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자) 은평장애인복지관 건립

▶ 사업 및 추경 개요

- 본 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촉진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구립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음.

사업 개요

- ①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 ② 사업내용
 - 위치 : 은평구 녹번로 1길 13(녹번동)
 - 사업규모 : 토지 1,662㎡, 연면적 2,855.10㎡(지상4층/지하1층)
 - 활용용도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총사업비 : 8,813백만원(시비 2,600백만원, 구비(기부채납) 6,213백만원)

- 집행부는 '19년 8월 준공 예정인 연차별 투자사업으로 자치구 요청에 따라 조기 지원 반영으로 기정예산 5억 대비 10억을 증액한 15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하였음.

<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500,000	500,000	1,00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0	500,000	1,000,000	◦공사비	1,000,000

▶ 추경 편성의 필요성 및 예산 편성시 주의점

- 공사일정이 지연되어 본예산 수립시 필요예산을 모두 확보하지 않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예산 추계시 공사진행추이를 살펴 치밀한 예산 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추경안 중 국시비 감액 편성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

- 국고보조금 변동 등의 사유로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감액 편성된 사업은 의료급여관리사지원(2,209백만원, 기정예산대비 △323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544,138백만원, 기정예산대비 △2,909백만원),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기본(10,798백만원 기정예산대비 △621백만원),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종합(7,382백만원, 기정예산대비 △1,629백만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1,547백만원, 기정예산대비 △391백만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134백만원, 기정예산대비 △10백만원) 6개 사업임.
- 위 사업들은 예산 편성 목적과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집행부와 의회 간 감추경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중앙부처의 결정한 바에 따라 수동적으로 감추경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이같은 수동적인 추경 편성이 이루어지는 근본적 원인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대부분의 국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예산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에 기인하기 때문임.
- 그로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기는 하지만 책임의 소재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 아닌 중앙부처의 확정 내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그 업무를 집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복지본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의 문제점은 사무처리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중첩적,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산의 사용부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예산을 획득하여 추진한 사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필요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산편성의 불합리 및 비효율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함.

- 그러므로 지방분권 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관위임한 사무 및 단체위임한 사무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로 재배분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추경안 중 시비 증액 편성분에 대한 검토

1)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 사업 및 추경 개요

- 본 사업은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현재 도봉구 창동에 소재한 광역푸드뱅크센터를 이전하기 위한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를 추가로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임.

추경사업개요

- ① 사업근거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7조
- ② 사업내용 : 광역푸드뱅크센터 및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 푸드뱅크 26개소(광역 1개소, 자치구 25개소) 및 푸드마켓 25개소(자치구) 등
 - 『행복4구 Plan』 및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에 따라 광역푸드뱅크센터 이전(도봉구 창동 → 중랑물재생센터)설계비 및 설계보상비 반영

▶ 집행부의 사전 관리 미흡문제

-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은 '18년도 초부터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 로봇과학과 및 사진미술관이 '19년도에 착공 예정이었던 바,
- '18년도 예산편성 시 '18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집행부는 이를 알고도 해당사업을 태만히 관리하였다 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금번 추경예산은 광역푸드뱅크센터 이전에 따른 설계비 및 설계 보상비이므로 이를 시급하다 볼 수는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추경타당성 여부

- 본 사업은 사안의 긴급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는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2)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 사업 및 추경 개요

- 본 사업은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 불편함에도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원 받지 못한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고 있음.

추경사업개요

- ① 사업대상 : 사실상 독거 어르신 및 중증 장애인
 - 선정요건 : 신체·경제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및 3급 장애인(60세 미만)
- ② 사업내용 : 가사보조(청소·세탁·목욕), 말벗, 외출동행 등 활동보조

- ③ 수행인력 : 재가관리사 78명 ※'17년 97명(19명 퇴직), '18년 퇴직예정자 13명
- 재가관리사 1인당 8~15명 대상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근로형태 : 정년(60세)이 보장되는 준 상용직(고용자:자치구)
 - 월보수액 : 기본급 1,489,600원, 수당 22만원(통신·교통·중식수당)
 - ※ 상여금(기본급의 175%), 명절 휴가비(10만원) 별도지급
- ④ '18년 소요예산 : 3,067백만원(시비100%)

▶ **일몰 예정 대상 사업에 대한 운영 문제**

- 서울형 재가관리사운영 사업은 일몰 대상 사업으로 25개 자치구 중 '15년 성북구가 사업을 종료하였고, '17년 서초구도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현재 23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음.
- '18년 현재 재가관리사 현원 78명 중 퇴직예상 재가관리사는 13명이고, '19년 14명으로 근로 중인 재가관리사의 정년연령(60세)가 도래함에 따라 해당사업의 지속 운영이 어려움이 존재함.

<표> 재가관리사 사업운영추이

구 분	'17	'18	'19	'20	'21	'22	'23~'27
현 원	97	78	65	51	33	19	13
퇴직예상인원	19	13	14	17	14	6	13

※ 23개 자치구 운영 ※ '15년 성북, '17년 서초 사업종료

- 그러나 사업 수혜대상층이 사실상 독거 어르신 또는 중증 장애인이므로 현재 재가관리사의 정년으로 인해 사업이 종료되어도 유사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대책 및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해 보임.

라. 추경안 중 시비 감액 편성 사업에 대한 검토

- 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및 운영은 장애인과 지역주민 모두가 어울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공간 마련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집행부는 「어울림플라자 공유재산 개발 및 관리 위수탁 계약체결(‘17.12.8.)」에 따라 건물유지관리비용은 서울주택공사가 부담하므로 감추경(△30백만원)하는 내용으로 추경안을 편성하였음.

사업개요 및 감추경 사유

① 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및 운영

○ 사업개요

- 위치 : 강서구 공항대로 489(등촌동)
- 규모 : 지하2층, 지상6, 8층(대지면적 6,683㎡, 연면적 18,098㎡)
- 주요시설 : 장애인 연수·교육 시설, 일반임대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 사업방식 : SH공사 민간위탁 개발방식(※ SH공사에서 일부 투자 후 28년간 사업비 회수)
- 사업예산 : 47,887백만원(시비 26,363, 민간자본(SH공사) 21,524)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18.2~5월, 3회 : 등촌1동장, 백석초등학교 학무도 등 면담
- '18. 3월 : 위탁개발사업 참여 동의안(SH공사) 시의회 의결
- '18. 4월 : 현상설계공모 등 관련절차 이행 요청(시→SH공사)
- '18. 6월~12월 : 임대시설 규모 등 속의 추진 및 설계공모 관련 사전절차 이행

○ 감액사유

- 「어울림플라자 공유재산 개발 및 관리 위수탁 계약체결(‘17.12.8.)」에 따라 건물유지관리비용은 서울주택공사가 부담하므로 감추경

- 예산 단년도 원칙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감안하면 집행부의 감액 추경안은

문제점 없다고 할 것이나, 예산은 정책을 회계적으로 표현한 결정문이라는 점에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심사 준비 미흡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불용 또는 미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집중적인 사업 의지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집행을 저조한 사업에 대한 집행 계획 재점검 필요

- 2018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의 각 사업 중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18년 7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는 바, 해당 예산의 집행가능 여부와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 등이 요망된다 하겠음.

<표> 2018회계연도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18.7.31. 기준)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집행률(B/A)	추경증감
복지 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지원	20,167	11,306	8,861	56.1	300
	국고보조금 반환금(복지정책과)	1,919	1,909	10	99.5	143
희망 복지 지원과	정부양곡 할인 지원	16,284	12,070	4,214	74.1	4,407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3,731	9,605	4,126	70.0	3,432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2,257	1,759	497	78.0	80
	의료급여사업	1,093,691	868,604	225,087	79.4	338
	의료급여관리사지원	2,532	1,638	894	64.7	△323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집행률(B/A)	추경증감
	긴급복지지원사업	17,100	13,212	3,888	77.3	237
	인력운영비(의료급여사업)	36	22	14	60.3	2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47,047	435,296	111,751	79.6	△2,909
	국고보조금 반환금(희망복지지원과)	252	252	0	100.0	532
어르신복 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173,045	123,045	50,000	71.1	△9,174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9,418	668	8,750	7.1	2,148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773	584	188	75.6	156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3,067	1,832	1,235	59.7	△200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기본)	11,420	7,507	3,913	65.7	△621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종합)	9,010	4,833	4,177	53.6	△1,629
	고양시 대로 3-33호선 도로확장 분담금	1,000	1,000	0	100.0	1,300
	서울 추모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8,830	8,330	500	94.3	3,700
	국고보조금 반환금(어르신복지과)	3,532	3,525	7	99.8	143
인생 이모작지 원과	보람일자리 사업	10,006	6,628	3,378	66.2	900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6,766	3,320	3,445	49.1	3,289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0	0	0	-	4,241
	국고보조금 반환금 (인생이모작지원과)	1,090	0	1,090	0.0	4,625
장애인 복지	장애인거주시설운영	95,071	55,677	39,393	58.6	1,946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집행률(B/A)	추경증감
정책과	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및 운영	30	0	30	0.0	△3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741	741	0	100.0	499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359	346	13	96.4	173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366	1,537	2,829	35.2	△391
	국고보조금 반환금 (장애인복지정책과)	1,162	1,133	29	97.5	1,046
장애인 자립 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220,626	170,954	49,672	77.5	2,795
	장애수당-기초	29,113	16,958	12,154	58.3	600
	중증장애인연금	113,677	79,489	34,188	69.9	5,556
	여성장애인흡혈퍼지원	1,137	977	160	86.0	74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	144	96	48	66.5	△10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2,265	159	2,106	7.0	359
	은평장애인복지관 건립	500	500	0	100.0	1,000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3,749	253	3,496	6.7	100
자활 지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장애인자립지원과)	1,098	1,098	0	100.0	652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1,134	917	217	80.8	255
	노숙인 의료지원	7,015	2,645	4,370	37.7	△150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4,127	2,087	2,039	50.6	2,976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1,947	8,055	3,893	67.4	△493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6,312	5,399	913	85.5	448
	국고보조금 반환금(자활지원과)	2,492	2,492	0	100.0	1,447

- 복지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 추가경정안은 국·시비 사업의 국비 변경 내시 및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영하여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과 기타회계전입금 감액분을 상계하여 증액분을 반영한 예산임.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자체필요 사업 20건을 중심으로 안전관련 설비보강 및 저소득층과 복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라는 사회보호망을 견고히 하고자하는 안으로 제출되었음.
- 그러나 제출된 안건 중 안전관련 설비보강과 관련한 사업들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그 밖의 사업들은 2019년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로 판단됨.
-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사업의 경우, 수혜 대상인원을 본예산 수립 시 추계 예상하여 본예산에 확대 편성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예산 증액을 하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 및 과학적인 필요예산추계 등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의 소지가 존재하다고 판단됨.
- 금번에 제출된 복지본부 소관 사업들은 사업 수혜대상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임을 감안할 때 예산수립 당시에 과학적이고 치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적시에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 및 불용액 과다로 인한 비효율적 기회비용 또는 부족액이 발생 등의 사유로 관련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1 긴급복지 사업

□ 5개년 자치구별 긴급복지 사업 추진 실적

(단위: 가구,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기준 : 2018.7.31)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계	11,182	10,484,901	31,843	25,951,524	27,854	21,146,378	38,230	26,864,665	22,519	15,384,027
종로구	199	133,618	858	478,378	585	328,868	950	461,687	508	254,233
중구	204	192,662	407	357,252	417	310,588	467	378,856	440	245,455
용산구	136	180,069	488	490,056	478	436,352	505	444,961	307	243,135
성동구	375	459,458	874	809,789	713	605,952	866	659,755	472	287,287
광진구	415	379,020	910	807,656	949	742,052	986	732,332	557	376,980
동대문구	506	611,179	1,644	1,310,773	1,896	1,304,575	2,143	1,616,725	1,277	1,009,305
중랑구	515	500,628	1,551	1,337,688	1,329	1,062,434	2,052	1,510,087	1,352	875,610
성북구	463	566,332	,524	,247,802	1,232	1,206,070	1,408	1,142,023	703	487,742
강북구	23	409,714	911	798,626	1,069	798,627	1,134	984,605	738	477,797
도봉구	373	413,374	1,552	1,064,194	1,025	809,236	1,464	1,000,020	876	645,470
노원구	430	509,571	1,312	1,173,446	1,561	1,333,620	1,839	1,719,978	1,255	1,025,872
은평구	674	663,904	1,175	1,048,797	919	779,071	1,228	945,547	724	690,040
서대문구	232	111,480	424	462,526	474	491,598	854	701,366	448	344,630
마포구	552	487,298	1,200	892,595	1,052	845,871	1,208	888,757	582	394,603
양천구	318	304,956	1,151	954,619	1,240	878,292	2,092	1,270,820	1,351	801,474
강서구	627	719,738	1,255	1,292,225	1,130	973,655	1,577	1,389,959	1,081	888,500
구로구	368	407,382	839	751,523	894	678,641	1,854	1,128,000	1,317	838,255
금천구	524	406,590	1,475	918,439	1,512	917,890	2,312	1,350,897	1,424	693,250
영등포	1,231	690,200	1,683	965,924	1,261	751,374	1,697	932,471	1,185	589,641
동작구	524	481,773	1,738	1,439,552	1,849	1,219,184	2,442	1,642,301	1,291	880,082
관악구	470	449,453	1,370	1,171,621	2,052	1,361,224	3,111	1,835,349	1,631	1,018,938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기준 : 2018.7.31)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서초구	224	190,969	826	636,984	916	625,361	943	672,790	391	232,115
강남구	314	203,432	2,349	1,973,904	1,056	795,454	1,761	1,124,005	625	661,913
송파구	589	563,805	2,030	1,627,642	1,044	720,937	1,622	1,104,735	981	701,537
강동구	496	448,298	2,297	1,939,512	1,201	1,169,452	1,715	1,226,639	1,003	720,161

※ 자치구비 포함(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